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275
----------	-------

발의연월일 : 2026. 4. 13.

발 의 자 : 손명수 · 황명선 · 홍기원
김준혁 · 백선희 · 허성무
염태영 · 이연희 · 윤종균
복기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자동차 안전기준 일부에 대한 특례와 유상 여객·화물 운송의 조건부 허용을 통해 자율주행 실증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핵심 구역이며 자율주행기술 개발을 위한 중요한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반기별로 지구를 지정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지방정부 및 기업의 다양한 실증 수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시·도지사가 시범운행지구를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고,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변경·해제 등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지방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주행자동차 실

증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의 직권 지정 및 해제 권한도 보완하여 원활한 실증 추진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등).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전단 중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구역을 시범운행지구”를 “시범운행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3항”을 “제1항,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제16조의2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시범운행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를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의 공보

에 고시하고, 이를 협의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7조제1항”을 “제7조”로 한다.

제2장에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지방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시·도지사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 관한 정책 및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방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시범운행지구에 관한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제7조제4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제17조에 따른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제3항 후단 중 “개선”을 “지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개선”으로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생략)
<신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시범운행지구의 운영 및 관리 등) ① 시범운행지구로 지정·고시된 구역을 관할하는 시·도는 제7조제1항에 따라

할 수 있다. 시범운행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

-----.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⑦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를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의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협의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7항-----

-----.

제8조(시범운행지구의 운영 및 관리 등) ① -----

-----제7조-----

지정·고시된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생략)

<신설>

-----.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지방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시·도지사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에 관한 정책 및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주
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방위
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
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시범운행지구
에 관한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제7조제4항에 따른 시범운
행지구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제17조에 따른 시범운행지구
의 운영에 대한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범운행지구의 지
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으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
는 사항

제17조(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①·② (생략)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평가 결과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개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③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지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개선-----.

④ (현행과 같음)